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수행자로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소속공무원의 소송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도모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포상금 지급금액 개정(안 제5조)

- 본안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를 “1건당 600,000원 이내”로 개정
-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200,000원 이내”로 개정
- 신청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100,000원 이내”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별첨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구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구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
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
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금을 균등분배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시 또
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
정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
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
다.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
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
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
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
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
등분배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
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
級)마다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 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 .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 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
---	--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속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소송사건(행정소송, 민사단독 및 소액사건) 중 조례안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조건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소송수행자(대리인)에게 사기증대 및 책임성을 부여하여 패소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배상액 최소화에 기여
- ※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대리) 한 직전 2개연도 포상금 지급사건
- 2010년도 : 4건, 2011년도 : 5건
- 연간 지급예상액 1천만원 이하로 재정수반 요인이 미미함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7급 박 혜 선